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관련 질의응답 배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에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가 도입('15.1.28)되어 기존 수입자의 의약품등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16.9.28일까지 수입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약사법령 경과조치에 따라 수입업 미신고시 '16.9.29일 이후 수입통관 불가하며, 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통관 가능

3. 이에 우리처에서는 수입업의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서'를 마련한 바, 아직까지 수입업 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불임'을 참조로 조속히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 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수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주무관 김현수 사무관 송현수 의약품관리총괄과장 전결 2016. 7. 28. / 김춘래

협조자

시행 의약품관리총괄과-5267 (2016. 7. 2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의약품관리총괄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55 팩스번호 043-719-2650 / goldhans@korea.kr / 대국민 공개